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58574 유류분 반환

예정 기일 :

담당재판부 : 민사4단독

법원주사보 전준후

직통 전화 : 064-729-2112

팩 스 :

e-mail :

재판부 이메일 주소는 문의사항을 연락하기 위한 연락처이므로 재판부 이메일 주소로 전자  
문서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제출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진행과 관련된 정보(송달과 확정내역 포함)는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나의사건검색'란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등경매사건은 대한민국법원 경매정보홈페이지(<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사건검색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발송처

제주지방법원

제주지 남광북5길 3 제주지방법원

63223

서울 송파구 거마로 56,

103동 404호 (거여동,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

수신처

김미영

A1 138 06 09

공적용 서물용피

05767

2096962-302610

(민사과 민사4단독)

2023-01-58574-743

피고



## 소 장

- 원 고
1. 김은영(740128-\*\*\*\*\*)  
제주시 화삼로 12, 205동 501호(화북이동, 삼화사랑으로부영2차아파트)
  2. 김준호(770419-\*\*\*\*\*)  
이천시 백사면 이여로 260-16, 103동 201호(조읍리, 한솔아파트)
- 원고들 소송대리인
- 변호사 한주영  
제주시 중앙로 312, 101호 (이도이동, 형제빌딩)  
( 휴대전화: 010-8941-\*\*\*\* 이메일: kenshinf@hanmail.net )
- 변호사 이정언  
제주시 중앙로 312 (이도이동 1026-17, 형제빌딩) 1층  
( 전화: 064-727-5055 휴대전화: 010-5169-\*\*\*\*  
팩스: 064-721-5057 이메일: eonbyeon33@gmail.com )
- 피 고 김미영(750512-\*\*\*\*\*)  
이천시 부발읍 부발중앙로46번길 46, 103동 1303호(무촌리, 효양아파트)

유류분 반환

##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주도 해안동 21 임야 3527㎡ 중 각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 1. 당사자의 지위

망 김창만은 소외 김진들 사이에 원고들, 피고 김은영 및 김은주를 두었습니다. 망 김창만과 소외 김진들은 1994. 12. 30. 협의이혼 하였 습니다(소갑제1호증 기본증명서(망 김창만), 소갑제2호증 제적등본(망 김창만) 참조).

망 김창만은 2023. 1.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과 상속지분은 원고 들, 피고 및 김은주가 각 1/4입니다(소갑제1호증 기본증명서(망 김창 만), 소갑제2호증 제적등본(망 김창만), 소갑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망 김창만), 소갑제4호증 말소자초본(망 김창만) 참조).

그러나 원고들은 망 김창만의 사망으로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지 못 하였으며 원고들의 유류분 지분은 1/8입니다.

### 2.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

가. 망 김창만의 생전 재산관계에 관하여



원고들이 알고 있는 땅 김창만이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

| 순번 | 부동산  | 입증방법                |
|----|--|---------------------|
| 1  | 제주시 해안동 21 임야 3,527㎡                         | 소갑제11호증의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2  | 제주시 노형동 2817 전 2,245㎡                        | 소갑제11호증의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3  | 제주시 해안동 698 임야 3,828㎡                        | 소갑제11호증의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4  | 제주시 아라일동 6075-2외1필지<br>아라미화아파트 제1동 제2층 제202호 | 소갑제11호증의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땅 김창만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 만성 알코올중독 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땅 김창만의 소유이던 제주시 해안동 21 임야 3527㎡ 및 제주시 노형동 2817 전 2,245㎡는 2013. 7. 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으며, 제주시 아라일동 6075-2외1필지 아라미화아파트 제1동 제2층 제202호 부동산은 2013.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한원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으며 매매대금은 2013. 8. 22. 피고가 한원용으로부터 8,5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땅 김창만은 생전에 피고를 상대로 위 2013. 7.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2013.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땅 김창만의 의사무능력 상태 및 증여계약을 해제를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하여 제주시 해



안동 21 입야 3527㎡ 및 제주시 노형동 2817 전 2,245㎡은 망 김창만이 피고에게 유효하게 증여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피고가 처분한 아라미화아파트 제202호의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만 일부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소갑제9호증의1 판결문(제주지방법원 2013가단16007호), 소갑제9호증의2 나의사건검색 참조).

제주시 해안동 678 입야 3,828㎡ 부동산은 실제로는 망 김창만이 원고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었으나, 망 김창만과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소유권 문제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되고,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혹시나 제주시 해안동 678 입야 3,828㎡ 부동산마저 피고에게 넘어갈 우려를 대비하고자 민사소송 전에 형식적으로 원고들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게 되었습니다. 망 김창만은 피고에게 제기한 말소소송의 1심 판결 이후 원인무효의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승소판결을 받아 가등기는 말소되었습니다(소갑제11호증의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갑제12호증의1 판결문(제주지방법원 2015가단7298호) 참조). 이후 제주시 해안동 678 입야 3,828㎡ 부동산은 망 김창만의 큰형의 배우자인 소외 이소영에게 2017. 2.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위 부동산 외에는 망 김창만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나. 유류분의 청구

망 김창만은 2013. 7. 4. 제주도 해안동 21 임야 3527㎡ 및 제주도 노형동 2817 전 2,245㎡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는 망 김창만의 공동상속인에 해당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따라서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망 김창만에게 증여받은 별지 기재 부동산 및 제주도 노형동 2817 전 2,245㎡은 피고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수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가 특별수익한 재산은 원고들의 최소한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으로서, 원고들에게 유류분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직계비속으로서 민법 제1112조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1/2 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위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1/8(1/4×1/2)의 유류분을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 다.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

##### 1) 유류분 부족분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분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유증 포함)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익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분담액

#####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3. 7. 4. 증여받은 부동산 중 제주시 노형동 2817 전 2245㎡ 부동산은 피고가 2016. 3. 17. 주식회사 블룸하우징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2016. 4. 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해당부동산은 같은동 2812번으로 합병되어 말소되었습니다. 2016. 3. 17. 매매 당시 거래가액은 1,358,000,000원입니다.

아직까지 피고 소유로 남아있는 제주시 해안동 21 임야 3527㎡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인 2023. 1. 25.에서 최근 2022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104,046,500원(29,500원 × 3527㎡)입니다.

구체적인 기초재산 및 유류분 부족액은 추후 피상속인의 재산 확인 및 시가감정결과를 통해서 확장하여 특정할 예정이나 현재 확인된 바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의 합계는 1,462,046,500원입니다.

### 3) 유류분 비율(B) 및 유류분액(A\*B)





피상속인의 자녀가 모두 4인이어서 법정상속분이 각 1/4이므로, 유류분 비율은 1/8입니다. 따라서 원고들과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액은 각 182,755,812원(1,462,046,500/8, 원 미만 버림)입니다.

4) 특별수익액(C)과 순상속분액(D)

원고들의 특별수익은 없고, 피고는 1,462,046,500원의 특별수익이 있으며, 상속재산은 없기 때문에 순상속분액은 0원입니다.

5)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 182,755,812원 [(A\*B) - C - D]

따라서 원고들과 다른 상속인들 유류분 초과부족금액은 각 182,755,812원으로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이 인정됩니다.

| 상속인 | 유류분액 (A*B)  | 특별수익 (C)      | 순상속분 (D) | 유류분초과부족액      |    |
|-----|-------------|---------------|----------|---------------|----|
| 피고  | 182,755,812 | 1,462,046,500 | 0        | 1,279,290,688 | 초과 |
| 원고들 | 182,755,812 | 0             | 0        | 182,755,812   | 부족 |
| 김은주 | 182,755,812 | 0             | 0        | 182,755,812   | 부족 |
| 김준호 | 182,755,812 | 0             | 0        | 182,755,812   | 부족 |

라. 피고의 유류분 반환 의무



### 1) 유류분 반환의 범위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 2) 유류분 반환의 방법

판례는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



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에도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고 있으며,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에 부동산과 금원이 혼재되어 있거나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부동산의 지분이 많지 않다는 사정은 원물반환을 명함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등 참조).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제주시 해안동 21 임야 3527㎡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 마. 소결

따라서 원고들은 유류분 부족분인 182,755,812원의 한도에서 피고에 대하여 그 재산의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가 특별수익한 재산 중 현재까지 소유 중인 부동산은 제주시 해안동 21 임야 3527㎡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해안동 21 임야 3527㎡은 잠정 가액이 2022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104,046,500원이라할 것인바, 이는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분인 182,755,812원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으로, 원고들은 잠정적으로



피고에게 제주시 해안동 21 임야 3527㎡에 대하여 각 2분의 1 지분  
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원고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제주시 해안동 21 임야 3527㎡의 가액에서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후  
피고의 주장 내용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상 재산 특  
정한 후 추후 감정을 통하여 금액을 특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3. 결론

위와 같이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아무런 상속도 받지 못하  
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 입 증 방 법

- |                |                           |
|----------------|---------------------------|
| 1. 갑 제1호증      | 기본증명서(망 김창만)              |
| 2. 갑 제2호증      | 제적등본(망 김창만)               |
| 3. 갑 제3호증      | 가족관계증명서(망 김창만)            |
| 4. 갑 제4호증      | 말소자초본(망 김창만)              |
| 5. 갑 제5호증      | 기본증명서(김은영)                |
| 6. 갑 제6호증      | 가족관계증명서(김은영)              |
| 7. 갑 제7호증의 1   | 주민등록초본(김은영)               |
| 8. 갑 제7호증의 2   | 주민등록등본(김은영)               |
| 9. 갑 제8호증      | 기본증명서(김준호)                |
| 10. 갑 제9호증     | 가족관계증명서(김준호)              |
| 11. 갑 제10호증의 1 | 주민등록초본(김준호)               |
| 12. 갑 제10호증의 2 | 주민등록등본(김준호)               |
| 13. 갑 제11호증의 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14. 갑 제11호증의 2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15. 갑 제11호증의 3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16. 갑 제11호증의 4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17. 갑 제12호증의 1 | 판결문(제주지방법원 2013가단16007호)1 |
| 18. 갑 제12호증의 2 | 나의사건검색                    |
| 19. 갑 제13호증    | 판결문(제주지방법원 2015가단7298호)   |
| 20. 갑 제14호증    | 제주시 해안동 21번지 개별공시지가       |

## 첨 부 서 류

1. 소가계산서
2. 토지대장
3. 소송위임장

제주지법 2023가단58574 유류분 반환 2023.05.11 제출 원본과 상위 없음

2023.05.1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주영

변호사 이정언

제주지방법원 귀중



## 목적물가액

1. 제주도 해안동 21 입야 3527㎡

개별공시지가 27,300원/㎡

$$3527 \times 27,300\text{원}/\text{㎡} \times 50/100 = 48,143,550\text{원}$$

문서확인번호 : 1693-7988-5702-4067



# 토지 대장

|      |                       |    |        |
|------|-----------------------|----|--------|
| 고유번호 | 5011013900-10021-0000 |    |        |
| 토지소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    |        |
| 지번   | 21                    | 축척 | 1:1200 |

|      |           |      |                      |
|------|-----------|------|----------------------|
| 도면번호 | 2         | 발급번호 | 202350110-01193-9288 |
| 장번호  | 1-1       | 처리시각 | 16시 06분 21초          |
| 비고   | 발급자 인터네티원 |      |                      |

|    |       |    |      |      |     |      |
|----|-------|----|------|------|-----|------|
| 지목 | 면적(㎡) | 사유 | 변동일자 | 변동원인 | 주 소 | 등록번호 |
|----|-------|----|------|------|-----|------|

|         |        |                    |               |   |              |                |
|---------|--------|--------------------|---------------|---|--------------|----------------|
| (05) 임야 | *3327* | (51) 2006년 07월 01일 | 2013년 07월 04일 | 경기도 인천시 부평북부말중앙로46번길 46, 103동 1303호 (호임아파트) | 성명 또는 명칭 김미영 | 750512-2-***** |
|---------|--------|--------------------|---------------|---|--------------|----------------|

|               |  |  |  |  |  |  |
|---------------|--|--|--|--|--|--|
| --- 이하 여백 --- |  |  |  |  |  |  |
|---------------|--|--|--|--|--|--|

|               |  |  |  |  |  |  |
|---------------|--|--|--|--|--|--|
| --- 이하 여백 --- |  |  |  |  |  |  |
|---------------|--|--|--|--|--|--|

|               |  |  |  |  |  |  |
|---------------|--|--|--|--|--|--|
| --- 이하 여백 --- |  |  |  |  |  |  |
|---------------|--|--|--|--|--|--|

|               |  |  |  |  |  |  |
|---------------|--|--|--|--|--|--|
| --- 이하 여백 --- |  |  |  |  |  |  |
|---------------|--|--|--|--|--|--|

|               |  |  |  |  |  |  |
|---------------|--|--|--|--|--|--|
| --- 이하 여백 --- |  |  |  |  |  |  |
|---------------|--|--|--|--|--|--|

|               |  |  |  |  |  |  |
|---------------|--|--|--|--|--|--|
| --- 이하 여백 --- |  |  |  |  |  |  |
|---------------|--|--|--|--|--|--|

|               |  |  |  |  |  |  |
|---------------|--|--|--|--|--|--|
| --- 이하 여백 --- |  |  |  |  |  |  |
|---------------|--|--|--|--|--|--|

|               |  |  |  |  |  |  |
|---------------|--|--|--|--|--|--|
| --- 이하 여백 --- |  |  |  |  |  |  |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 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 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23년 5월 11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소 송 위 임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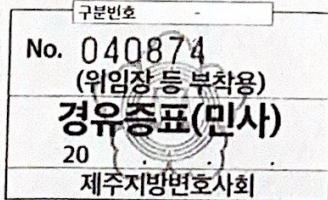
|             |          |
|-------------|----------|
| 사 건         | 유류분 반환   |
| 원고<br>(위임자) | 김은영 외 1명 |
| 피고<br>(상대방) | 김미영      |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표시 수임인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위 사건에 관한 일체의 권한 및 아래의 권한을 수여한다.

|       |  |
|-------|--|
| 수 임 인 | <b>법률사무소 제주드림</b><br>변호사 <b>한주영</b> , 변호사 <b>이정언</b><br>제주시 중앙로 312. 1층 (이도이동, 형제빌딩) |
|-------|--|

|         |   |
|---------|---|
| 수 권 사 항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체의 소송행위</li> <li>2) 가압류, 가처분 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취소</li> <li>3) 소청가, 반소의 제기와 응소 및 소송제기, 상소취하, 상소권 포기</li> <li>4) 재판상 및 재판외 화해</li> <li>5) 소(반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및 인낙</li> <li>6) 복대리인, 특별 대리인 선임</li> <li>7) 공탁, 담보의 제공, 공탁물과 공탁물이자 수령</li> <li>8) 담보취소, 권리 최고행사, 담보취소 동의, 즉시항고, 즉시항고권 포기</li> <li>9) 강제경매 신청, 취하, 경락대금 수령</li> <li>10) 변제공탁</li> <li>11) 대체집행, 강제집행</li> <li>12) 소송비용 청구</li> </ol> |
|---------|---|

2023. 5 . .



위임인 : 김은영



김준호



제주지방법원 귀중



## 기본증명서 (상세)

[폐쇄]

|       |                   |
|-------|-------------------|
| 등록기준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길 7 |
|-------|-------------------|

| 구분 | 상세내용  |
|----|---|
| 작성 | [가족관계등록부작성일] 2008년 01월 01일<br>[작성사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
| 정정 | [도로명주소기록일] 2011년 12월 12일<br>[경정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이동 790번지<br>[경정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길 7<br>[경정사유] 도로명주소법 제20조 |
| 폐쇄 | [폐쇄일] 2023년 02월 17일<br>[폐쇄사유] 사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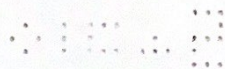
| 구분 | 성명  | 출생연월일         | 주민등록번호         | 성별 | 본  |
|----|---|---------------|----------------|----|----|
| 본인 | 김창만(金彰滿)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사망</span> | 1944년 02월 02일 | 440202-1932313 | 남  | 慶州 |

일반등록사항

| 구분 | 상세내용   |
|----|--|
| 출생 | [출생장소] 제주시 이호리 790번지<br>[신고일] 1949년 10월 24일<br>[신고인] 모   |
| 사망 | [사망일시] 2023년 01월 25일 09시 50분<br>[사망장소]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덕평로 224<br>[신고일] 2023년 02월 17일<br>[신고인] 비동거친족 김미영<br>[처리관서]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

갑 제1호증

위 기본증명서(상세)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발행번호 : 0153-2403-3753-0940

1 / 2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의 증명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발급일부터 3개월까지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갑 제1호증



2023년 04월 05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강병삼

※ 위 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현출한 상세증명서입니다.

발급시각 : 14시 22분  
발급담당자 : 강형주  
성 :  
신청인 : 신소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수입증지가 인영(침부)되지 아니한  
증명은 그 효력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발행번호 : 0153-2403-3753-0940

2 / 2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의 증명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발급일부터 3개월까지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 제1호증



제적등본

|   |   |         |   |
|---|---|---------|---|
| 본 적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리동 790번지  |         |   |
| 호적편제  | [편제일] 1965년 11월 11일   |         |   |
| 호적제제  | [제제일] 1993년 06월 23일<br>[제제사유] 멸실우려  |         |   |
| 전산이기  | [이기일] 2001년 12월 20일<br>[이기사유] 호적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         |   |
| 호적정정  | [행정구역명칭변경일] 2006년 07월 01일<br>[정정내용] 제주도 제주시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로 경정  |         |   |
| 호적말소  | [말소일] 2008년 01월 01일<br>[말소사유] 법률 제8435호에 의하여 말소   |         |   |
| 전호주와의 관계  |   | 김창선의 동생 |   |
| 부   | 김중훈   | 성       | 남   |
| 모   | 강송봉   | 별       | 慶州  |
| 호주  | 김창만(金彰滿)<br>제적  |         | 전호적<br>입 직 또는<br>신호적<br>출 생 서기 1944년 02월 02일<br>주민등록<br>번호 440202-1932313 |
| 출생  | [출생장소] 제주시 이호리 790번지<br>[신고일] 1949년 10월 24일 [신고인] 모   |         |   |
| 호주상속  | [호주상속일] 1952년 03월 15일<br>[호주상속사유] 전호주 사망<br>[직권기재허가일] 1965년 10월 27일<br>[허가법원] 제주지방법원<br>[직권기제일] 1965년 11월 11일 |         |   |
| 혼인  | [혼인신고일] 1974년 02월 18일<br>[배우자] 김진돌<br>[협의이혼신고일] 1994년 12월 30일<br>[배우자] 김진돌                                    |         |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제 주</b><br>(수입증서가 안양(검부)되지 아니한<br>증명은 그 효력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b>장 인</b><br>이도2동민원증통1 |   |         |   |

갑 제2호증



발행번호 : 1114-2102-3354-0640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의 증명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발급일부터 3개월까지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 제2호증



|     |   |   |   |    |                         |                                   |
|-----|---|---|---|----|-------------------------|-----------------------------------|
| 부   | 김을규   | 성 | 여 | 본  | 전호적                     | 경상남도 창원군 부곡면 청암리<br>274번지 호주 김을규  |
| 모   | 히술이   | 별 |   | 金海 |                         |                                   |
| 처   | 김진돌(金鎭沔)<br><br>[제적]  |   |   |    | 입<br>적<br>또<br>는<br>신호적 | 부산직할시 금정구 서동 212번지<br>의 38 호주 김진돌 |
|     |   |   |   |    | 출<br>생                  | 서기 1956년 03월 05일                  |
|     |   |   |   |    | 주민등록<br>번<br>호          | 560305-2932315                    |
| 출생  | [출생장소] 경상남도 창원군 부곡면 청암리 274번지<br>[신고일] 1956년 03월 19일 [신고인] 부                                      |   |   |    |                         |                                   |
| 혼인  | [혼인신고일] 1974년 02월 18일<br>[배우자] 김창만  |   |   |    |                         |                                   |
| 이혼  | [협의이혼신고일] 1994년 12월 30일<br>[배우자] 김창만<br>[제적일] 1994년 12월 30일                                       |   |   |    |                         |                                   |
| 부   | 김창만   | 성 | 여 | 본  | 전호적                     |                                   |
| 모   | 김진돌   | 별 |   |    |                         |                                   |
| 자   | 은주(恩珠)<br><br>[제적]  |   |   |    | 입<br>적<br>또<br>는<br>신호적 | 제주시 이도이동 1772번지의 27<br>호주 김익순     |
|     |   |   |   |    | 출<br>생                  | 서기 1972년 10월 04일                  |
|     |   |   |   |    | 주민등록<br>번<br>호          | 721004-2932319                    |
| 출생  | [출생장소] 제주시 용담리 257번지의 16<br>[신고일] 1974년 02월 18일 [신고인] 부   |   |   |    |                         |                                   |
| 혼인  | [혼인신고일] 1997년 09월 27일<br>[배우자] 김진범<br>[송부일] 1997년 10월 07일 [송부자] 인천광역시 남구청장<br>[제적일] 1997년 10월 07일 |   |   |    |                         |                                   |
| 공 란 |   |   |   |    |                         |                                   |

발행번호 : 1114-2102-3354-0640

2 / 5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의 증명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발급일부터 3개월까지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 제2호증



|     |   |   |   |   |                   |                                   |
|-----|---|---|---|---|-------------------|-----------------------------------|
| 부   | 김창만   | 성   | 여 | 본 | 전호적               |                                   |
| 모   | 김진돌   | 별   |   |   |                   |                                   |
| 자   | 은영(恩榮)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제적</div> |   |   | 입 적<br>또 는<br>신호적 |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br>2301번지 호주 백용대 |
|     |   |   |   |   | 출 생               | 서기 1974년 01월 28일                  |
|     |   |   |   |   | 주민등록<br>번호        | 740128-2932316                    |
| 출생  | [출생장소] 제주시 용담리 257번지의 16<br>[신고일] 1974년 02월 18일                      [신고인] 부  |   |   |   |                   |                                   |
| 혼인  | [신고일] 2005년 06월 07일<br>[배우자] 백진천<br>[제적일] 2005년 06월 07일   |   |   |   |                   |                                   |
| 부   | 김창만   | 성   | 여 | 본 | 전호적               |                                   |
| 모   | 김진돌   | 별   |   |   |                   |                                   |
| 자   | 미영(美榮)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제적</div> |   |   | 입 적<br>또 는<br>신호적 | 경상남도 예천군 보문면 승본동<br>426번지 호주 권기태  |
|     |   |   |   |   | 출 생               | 서기 1975년 05월 12일                  |
|     |   |   |   |   | 주민등록<br>번호        | 750512-2932330                    |
| 출생  | [출생장소] 제주시 삼도리 722번지<br>[신고일] 1976년 07월 29일                      [신고인] 부  |   |   |   |                   |                                   |
| 혼인  | [혼인신고일] 1996년 12월 12일<br>[배우자] 권기태<br>[송부일] 1996년 12월 17일                      [송부자]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장<br>[제적일] 1996년 12월 17일 |   |   |   |                   |                                   |
| 공 란 |   |   |   |   |                   |                                   |



|    |                          |    |   |   |           |                           |
|----|--------------------------|----|---|---|-----------|---------------------------|
| 부  | 김창만                      | 성  | 남 | 본 | 전화적       |                           |
| 모  | 김진돌                      | 별  |   |   |           |                           |
| 자  | 준호(準浩)                   | 제작 |   |   | 입적 또는 신호적 |                           |
|    |                          |    |   |   | 출생        | 서기 1977년 04월 19일          |
|    |                          |    |   |   | 주민등록번호    | 770419-1932311            |
| 출생 | [출생장소] 제주시 삼도일동 722번지의 6 |    |   |   |           |                           |
|    | [신고일] 1977년 05월 17일      |    |   |   |           | [신고인] 부                   |
| 부  | 김종훈                      | 성  | 여 | 본 | 전화적       | 제주시 이호리 921번지             |
| 모  | 강송봉                      | 별  |   |   |           | 호주 김봉휴                    |
| 누나 | 정자(貞子)                   | 제작 |   |   | 입적 또는 신호적 | 제주시 삼도일동 532번지의 6 호 주 김정자 |
|    |                          |    |   |   | 출생        | 서기 1929년 02월 06일          |
|    |                          |    |   |   | 주민등록번호    | 290206-2932311            |
| 이혼 | [협의이혼신고일] 1953년 04월 30일  |    |   |   |           |                           |
|    | [배우자] 김일현                |    |   |   |           |                           |
| 분가 | [분가신고일] 1984년 02월 09일    |    |   |   |           |                           |
|    | [신고인] 김정자                |    |   |   |           |                           |
|    | [제작일] 1984년 02월 09일      |    |   |   |           |                           |
| 부  | 김희영                      | 성  | 여 | 본 | 전화적       |                           |
| 모  | 김반                       | 별  |   |   |           |                           |
| 고모 | 일심(一心)                   | 제작 |   |   | 입적 또는 신호적 |                           |
|    |                          |    |   |   | 출생        | 서기 1935년 11월 20일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발행번호 : 1114-2102-3351-0610

4 / 5

※ 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의 증명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발급일부터 3개월까지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 제2호증



|    |                             |
|----|-----------------------------|
| 출생 | [출생장소] 제주시 이호리 790번지        |
|    | [신고일] 1935년 11월 26일 [신고인] 부 |

위 등본은 제적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23년 04월 05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강병삼

발급시각 : 14시 25분

발급담당자 : 강형주

장 :

신 정 인 : 신소영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폐쇄]

|       |                   |
|-------|-------------------|
| 등록기준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길 7 |
|-------|-------------------|

| 구분 | 성명  | 출생연월일         | 주민등록번호         | 성별 | 본  |
|----|---|---------------|----------------|----|----|
| 본인 | 김창만(金彰滿)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사망</span> | 1944년 02월 02일 | 440202-1932313 | 남  | 慶州 |

#### 가족사항

| 구분 | 성명       | 출생연월일         | 주민등록번호         | 성별 | 본  |
|----|----------|---------------|----------------|----|----|
| 부  | 김중훈      |               |                | 남  |    |
| 모  | 강송봉      |               |                | 여  |    |
| 자녀 | 김은주(金恩珠) | 1972년 10월 04일 | 721004-2932319 | 여  | 慶州 |
| 자녀 | 김은영(金恩榮) | 1974년 01월 28일 | 740128-2932316 | 여  | 慶州 |
| 자녀 | 김미영(金美榮) | 1975년 05월 12일 | 750512-2932330 | 여  | 慶州 |
| 자녀 | 김준호(金準浩) | 1977년 04월 19일 | 770419-1932311 | 남  | 慶州 |

갑 제3호증

위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23년 04월 05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강병삼

※ 위 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현출한 상세증명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수입증지가 인영(침부)되지 아니한  
증명은 그 효력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발급시각 : 14시 22분  
발급인원 : 김민영  
번호 :  
신청인 : 신소영

발행번호 : 9153-2303-3752-0949

1 / 1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의 증명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발급일부터 3개월까지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갑 제3호증

제주지법 2023가단58574 유류분 반환 2023.05.11 제출 원본과 상위 없음  
 발급 확인번호: 5040-1515-0514 80 이 초본은 발소된 별 주민등록표  
 의 원본 내용과 불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강형주 전화: 064-728-1531  
 신청인: 신소영 (1990-09-11)  
 용도 및 목적: 소송사건



주민등록표  
 ( 말소자 초본 )

2023년 4월 5일

이 용지는 위조식별 표시가 되어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장

|                  |                     |                         |                         |
|------------------|---------------------|-------------------------|-------------------------|
| 성명(한자)           | 김창만 (金彰滿)           | 주민등록번호                  | 440202-1932313          |
| 인 적 사 항 변 경 내 용  |                     |                         |                         |
| == 공 란 ==        |                     |                         |                         |
| "주민등록번호 정정내역 없음" |                     |                         |                         |
| 번호               | 주소                  | 발생일 / 신고일               | 세대주및관계<br>별 동 사 유 등록 상태 |
| 1                | 제주도 제주시 삼도일동 251    | 1969-09-10 / 1969-09-10 | 전입                      |
| 2                | 제주도 제주시 이호이동 730    | 1969-11-07 / 1969-11-07 | 전입                      |
| 3                | 제주도 제주시 삼도일동 251    | 1970-07-08 / 1970-07-08 | 전입                      |
| 4                | 제주도 제주시 용담일동 301    | 1970-07-13 / 1970-07-13 | 전입                      |
| 5                | 제주도 제주시 용담일동 278    | 1971-03-20 / 1971-03-19 | 전입                      |
| 6                | 제주도 제주시 용담일동 257-16 | 1973-02-05 / 1973-02-04 | 전입                      |
| 7                | 제주도 제주시 삼도일동 719-6  | 1974-11-15 / 1974-11-15 | 전입                      |
| 8                | 제주도 제주시 삼도일동 721-8  | 1975-04-09 / 1975-04-08 | 전입                      |
| 9                | 제주도 제주시 삼도일동 722-6  | 1976-07-28 / 1976-07-27 | 전입                      |
| 10               | 제주도 제주시 삼도일동 722-8  | 1979-01-08 / 1979-01-07 | 전입                      |

감제 4호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장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주민등록신고서 제출 후,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는 즉시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사실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자이미지관인을 인쇄하는 것으로 인접한 주민등록표와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직인의 색상은 직색 또는 흑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5일 제주시 이도2동장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 관계가 아님을 증명서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음장 계속)

제4호증

제주지법 2023가단58574 읍론분 반환 2023.05.11 제출 원본과 상위 없음  
 발급확인번호: 5040-1515-051-80 이 초본은 말소된 별 주민등록표  
 의 원본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주민등록표 ( 말소자 초본 )  
 담당자: 강형주 전화: 064-728-1531  
 신청인: 신소영 (1990-09-11)  
 용도 및 목적: 소송사건



2023년 4월 5일

이 용지는 위조식별 표시가 되어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장

| 성명(한자) | 김창만 (金彰滿)                                       | 주민등록번호                  | 440202-1932313     |
|--------|---|-------------------------|--------------------|
| 번호     | 주소  | 발생일 / 신고일               | 세대주및관계<br>변동사유등록상태 |
| 11     | 제주도 제주시 삼도일동 722-5                              | 1981-08-01 / 1981-08-01 | 전입                 |
| 12     | 제주도 제주시 삼도일동 517-10                             | 1982-02-01 / 1982-01-31 | 전입                 |
| 13     | 제주도 제주시 삼도일동 719-11                             | 1984-02-01 / 1984-01-31 | 전입                 |
| 14     | 제주도 제주시 아라일동 1683<br>아라주공아파트 108-309            | 1992-05-14 / 1992-05-19 | 전입                 |
| 15     | [제주시조례 제1473호]                                  |                         |                    |
| 16     | 제주도 제주시 아라일동 1683<br>아라주공아파트 108-309            | ----- / 1992-10-14      | 통반변경               |
| 17     | 제주도 제주시 아라일동 1745<br>아라미화아파트 1-202              | 1998-08-05 / 1998-08-05 | 전입                 |
| 18     | [제주시조례 제2011호(2004.7.30)로동반개정]                  |                         |                    |
| 19     | 제주도 제주시 아라일동 1745<br>아라미화아파트 1-202              | ----- / 2004-07-30      | 통반변경               |
| 20     | [제주도조례 제2538호('06.7.1)로 명칭 및 행정구역 변경]           |                         |                    |
| 21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1745<br>아라미화아파트 1-202          | ----- / 2006-07-01      | 행정구역변경             |
| 22     | [법률9771호(09.12.10) 도로명주소법, 공법관계의 주소변경]          |                         |                    |
| 2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1745<br>1동 202호 (아라일동,아라미화아파트) | ----- / 2011-10-31      | 도로명주소              |

- ※ 1. 본인이나 세대원은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부24(www.gov.kr)에서 위 발급확인번호로 내용의 진위여부를 발급일로부터 9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직인의 날인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자이미지관인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인의 색상은 적색 또는 흑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는 주민등록번호가 붙지 않은 외국인등록번호와 소년소녀가장내거소신고번호가 기재됩니다.  
 5. 정확한 가족관계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 관계가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음장계속]

합 제4호종

이 조본은 말소된 개별 주민등록표의 원본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강형주 전화:064-728-1531  
 신청인: 신소영 (1990-09-11)  
 용도 및 목적: 소송사건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복)

2023년 4월 5일

이 용지는 위조식별 표시가 되어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장

| 성명(한자) | 김창만 (金彰滿)   | 주민등록번호                | 440202-1932313          |
|--------|---|-----------------------|-------------------------|
| 번호     | 주소  | 발생일 / 신고일             | 세대주및관계<br>번호 동사 유 등록 상태 |
| 24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부발중앙로46번길 46, 103동 133호 (효양아파트)           | 2013-06-03 2013-06-03 | 전입                      |
| 25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원로 11, 206동 402호 (노형동,부영아파트)             | 2013-08-30 2013-08-30 | 전입                      |
| 2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로 12, 205동 501호 (화북이동, 제주삼화사람으로부영2차아파트) | 2014-10-10 2014-10-10 | 전입                      |
| 27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중산간서로 4135                            | 2014-12-03 2014-12-03 | 전입                      |
| 28     |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수산제방길 173                                | 2016-10-13 2016-10-13 | 전입 거주자                  |
| 29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7길 13                               | 2017-02-03 2017-02-03 | 전입 거주자                  |
| 3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암로96번길 28 (범천동)                           | 2018-05-24 2018-05-24 | 전입 거주자                  |
| 3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창로10번길 72-25 (범천동)                        | 2020-01-23 2020-01-23 | 전입 거주자                  |
| 32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덕평로 224                                   | 2022-11-21 2022-11-22 | 전입 거주자                  |
| 33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덕평로 224                                   | 2023-01-25 2023-02-17 | 김창만의 본인<br>11호통보의거사망발소  |

== 이 하 이 백 ==

- ※ 1. 본인이나 세대원은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2. 정부24(www.gov.kr)에서 위 발급확인번호로 내용의 진위여부를 발급일로부터 9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직인의 날인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자이미지관인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인의 색상은 적색 또는 흑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 4.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는 주민등록번호가 하필 지어지지 않으나, 신분증이나 신고번호가 기재됩니다.
- 5. 정확한 가족관계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의 관계가 아닌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음장없음]



### 기본증명서(상세)

|       |                             |
|-------|-----------------------------|
| 등록기준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로4길 17의 2 |
|-------|-----------------------------|

| 구분 | 상세내용  |
|----|---|
| 작성 | [가족관계등록부작성일] 2008년 01월 01일<br>[작성사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
| 정정 | [도로명주소기록일] 2011년 12월 12일<br>[정정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2301번지<br>[정정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로4길 17의 2<br>[정정사유] 도로명주소법 제20조 |

| 구분 | 성명       | 출생연월일         | 주민등록번호         | 성별 | 본  |
|----|----------|---------------|----------------|----|----|
| 본인 | 김은영(金恩榮) | 1974년 01월 28일 | 740128-2932316 | 여  | 慶州 |

일반등록사항

| 구분 | 상세내용   |
|----|--|
| 출생 | [출생장소] 제주시 용담리 257번지의 16<br>[신고일] 1974년 02월 18일<br>[신고인] 부 |

갑제5호증

위 기본증명서(상세)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23년 03월 29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유진오



※ 위 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현출한 상세증명서입니다.

발급시각 : 10시 23분  
신청인 : 김은영

발행번호 : 9195-2602-3996-2331

1 / 1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의 증명서 권위확인 메뉴에서 발급일부터 3개월까지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갑 제5호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
|-------|-----------------------------|
| 등록기준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로4길 17의 2 |
|-------|-----------------------------|

| 구분 | 성명       | 출생연월일         | 주민등록번호         | 성별 | 본  |
|----|----------|---------------|----------------|----|----|
| 본인 | 김은영(金恩榮) | 1974년 01월 28일 | 740128-2932316 | 여  | 慶州 |

#### 가족사항

| 구분  | 성명  | 출생연월일         | 주민등록번호         | 성별 | 본  |
|-----|---|---------------|----------------|----|----|
| 부   | 김창만(金彰滿)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사망</span> | 1944년 02월 02일 | 440202-1932313 | 남  | 慶州 |
| 모   | 김진돌(金鎭沱)  | 1956년 03월 05일 | 560305-2932315 | 여  | 金海 |
| 배우자 | 백진천(白晋千)  | 1973년 01월 14일 | 730114-1009211 | 남  | 洙源 |
| 자녀  | 백권우(白權祐)  | 2006년 06월 13일 | 060613-3933713 | 남  | 洙源 |
| 자녀  | 백설아(白設我)  | 2008년 04월 01일 | 080401-4933131 | 여  | 洙源 |

가족관계증명서

위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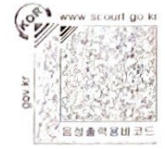
2023년 03월 29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유진오



※ 위 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현출한 상세증명서입니다.

발급시각 : 10시 22분  
신청인 : 김은영



주민등록표  
( 초 본 )

이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원본 내용과  
불립없음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전화:064-728-4723  
신청인:김은영 (1974-01-28)  
용도 및 목적:

2023년 03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 성명(한자)           | 김은영 (金恩榮)                            | 주민등록번호                   | 740128-2932316                |
|------------------|--------------------------------------|--------------------------|-------------------------------|
| 인 식 사 항 변 경 내 용  |                                      |                          |                               |
| == 공 간 ==        |                                      |                          |                               |
| "주민등록번호 정정내역 없음" |                                      |                          |                               |
| 번호               | 주 소                                  | 발 생 일 / 신 고 일<br>변 동 사 유 | 세대주및관계<br>등록 상태               |
| 1                | 제주도 제주시 용담일동 257-16                  | -----                    | 1974-03-12<br>김창만의 자녀<br>출생등록 |
| 2                | 제주도 제주시 삼도일동 719-6                   | 1974-11-15               | 1974-11-15<br>김창만의 자녀<br>전입   |
| 3                | 제주도 제주시 삼도일동 721-8                   | 1975-01-09               | 1975-04-08<br>김창만의 자녀<br>전입   |
| 4                | 제주도 제주시 삼도일동 722-6                   | 1976-07-28               | 1976-07-27<br>김창만의 자녀<br>전입   |
| 5                | 제주도 제주시 삼도일동 722-8                   | 1979-01-08               | 1979-01-07<br>김창만의 자녀<br>전입   |
| 6                | 제주도 제주시 삼도일동 722-5                   | 1981-08-01               | 1981-08-01<br>김창만의 자녀<br>전입   |
| 7                | 제주도 제주시 삼도일동 517-10                  | 1982-02-01               | 1982-01-31<br>김창만의 자녀<br>전입   |
| 8                | 제주도 제주시 삼도일동 719-11                  | 1984-02-01               | 1984-01-31<br>김창만의 자녀<br>전입   |
| 9                | 제주도 제주시 아리일동 1683<br>아리주공아파트 108-309 | 1992-05-14               | 1992-05-19<br>김창만의 자녀<br>전입   |
| 10               | [제주시조례제1473호]                        |                          |                               |
| 방역<br>사항         |                                      |                          |                               |

이 호는 공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 ※ 1. 본인이나 세대원은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2. 정부24(www.gov.kr)에서 위 발급확인번호로 비용이 전액어부를 발급일로부터 9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기 하산의 마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 3. 각인의 탈입은 행정입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전자이민관리인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각인의 개상은 식별 또는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4.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기재됩니다.
- 5. 정확한 기록관계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아닌 기록관계명칭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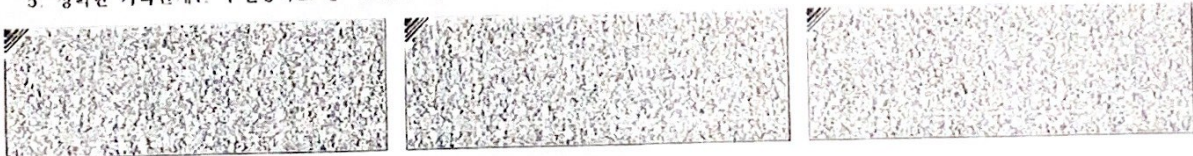
이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원본 내용과 불일치함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신정인 (1974-01-28) 전화: 064-728-4723  
 용도 및 목적: 2023년 03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 성명(한자) | 김은영 (金恩榮)  | 주민등록번호     | 740128-2932316          |                 |
|--------|--|------------|-------------------------|-----------------|
| 번호     | 주소   | 발생일 / 변동   | 신고일 사유                  | 세대주및관계 등록상태     |
| 11     | 제주도 제주시 아라일동 1683<br>아라주공아파트 108-309                     | -----      | 1992-10-14<br>동반변경      | 김창만의 자녀         |
| 12     | 제주도 제주시 아라일동 1745<br>아라미화아파트 1-202                       | 1998-08-05 | 1998-08-05<br>신입        | 김창만의 자녀         |
| 13     | [제주시조례 제2011호(2004.7.30)로동반개정]                           | -----      | 2004-07-30              | 김창만의 자녀         |
| 14     | 제주도 제주시 아라일동 1745<br>아라미화아파트 1-202                       | -----      | 동반변경                    |                 |
| 15     | 제주도 제주시 언동 1490-7<br>모던빌 -102                            | 2005-06-03 | 2005-06-03<br>신입        | 백진천의 배우자        |
| 16     | [제주도조례 제2538호('06.7.1)로 명칭 및 행정구역 변경]                    | -----      | 2006-07-01              | 백진천의 배우자        |
| 17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언동 1490-7<br>모던빌 -102                        | -----      | 행정구역변경                  | 백진천의 배우자        |
| 1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언동 1490-7<br>모던빌 -102                        | -----      | 2006-07-07<br>호적신고에의한정리 | 백진천의 배우자        |
| 19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754-4<br>부영아파트 206-402                   | 2007-03-21 | 2007-03-21<br>신입        | 백진천의 배우자        |
| 20     | [법령9774호(09.12.10) 도로명주소법, 공법관계의 주소변경]                   | -----      | 2011-10-31              | 백진천의 배우자        |
| 21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원로 11,<br>206동 402호 (노형동, 부영아파트)            | -----      | 도로명주소                   | 백진천의 배우자        |
| 2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로 12,<br>205동 501호 (화북이동, 제주삼화사랑으로부영2차아파트) | 2014-10-10 | 2014-10-10<br>신입        | 백진천의 배우자        |
| 2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로 166,<br>511동 501호 (삼양이동, 제주삼화사랑으로부영5차)   | 2022-01-12 | 2022-01-12<br>신입        | 백진천의 배우자<br>거주자 |

- 본인이나 세대원은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www.gov.kr)에서 위 발급확인번호로 내용의 진위여부를 발급일로부터 9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자확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 저인의 날인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자이미지인인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적인의 색상은 지색 또는 흑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기재됩니다.
- 정확한 가족관계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아닌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갑 제7-1호증





주민등록표  
(등본)

이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원본 내용과  
불일치함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전화:064-728-4723  
신청인: 김은영 (1974-01-28)  
용도 및 목적:



2023년 03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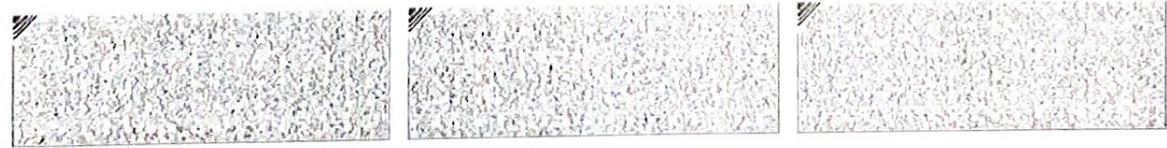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   |           |                             |                   |               |
|---|-----------|-----------------------------|-------------------|---------------|
| 세대주 성명(한자)  | 백진천 (白晋千) | 세대구성<br>사유 및 일자             | 신입<br>2005-02-28  |               |
| 주소  |           | 발생일 / 신고일                   | 변동사유              |               |
| 현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로 166,<br>511동 501호 (삼양이동, 제주삼회사랑으로부영5차) |           | 2022-01-12                  | 2022-01-12<br>신입  |               |
| == 공 란 ==   |           |                             |                   |               |
| 번호  | 세대주<br>관계 | 성명(한자)<br>주민등록번호            | 발생일 / 신고일<br>등록상대 | 변동사유          |
| 1   | 본인        | 백진천 (白晋千)<br>730114-1009211 | 2005-02-28<br>거주자 | 신입            |
| 2   | 배우자       | 김은영 (金恩榮)<br>740128-2932316 | 2005-06-03<br>거주자 | 신입            |
| 3   | 자녀        | 백권우 (白權佑)<br>060613-3933713 | -----<br>거주자      | 출생등록          |
| 4   | 자녀        | 백설아 (白設我)<br>080401-4933131 | -----<br>거주자      | 출생등록          |
| == 이하 이백 ==   |           |                             |                   | 강제<br>호증<br>거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1. 본인이나 세대원은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2. 정부24(www.gov.kr)에서 위 발급확인번호로 내용의 진위여부를 발급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 하단의 마크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자확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 3. 직인의 날인은 신청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전자이마지관인을 인쇄하는 것으로 권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인의 책상은 직책 또는 직책으로 할 수 있습니다.
- 4.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기재됩니다.
- 5. 성취한 가족관계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의와 관계가 아닌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본증명서(일반)

|       |                   |
|-------|-------------------|
| 등록기준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길 7 |
|-------|-------------------|

|    |  |
|----|--|
| 구분 | 상세내용   |
| 작성 | [가족관계등록부작성일] 2008년 01월 01일<br>[작성사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

| 구분 | 성명       | 출생연월일         | 주민등록번호        | 성별 | 본  |
|----|----------|---------------|---------------|----|----|
| 본인 | 김준호(金準浩) | 1977년 04월 19일 | 770419-1***** | 남  | 慶州 |

#### 일반등록사항

|    |  |
|----|--|
| 구분 | 상세내용   |
| 출생 | [출생장소] 제주시 삼도일동 722번지의 6<br>[신고일] 1977년 05월 17일<br>[신고인] 부 |

갑제 8 호증

위 기본증명서(일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유진오



※ 위 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현출한 일반증명서입니다.

발급시각 : 18시 06분  
신청인 : 김준호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                   |
|-------|-------------------|
| 등록기준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길 7 |
|-------|-------------------|

| 구분 | 성명       | 출생연월일         | 주민등록번호        | 성별 | 본  |
|----|----------|---------------|---------------|----|----|
| 본인 | 김준호(金準浩) | 1977년 04월 19일 | 770419-1***** | 남  | 慶州 |

#### 가족사항

| 구분 | 성명  | 출생연월일         | 주민등록번호        | 성별 | 본  |
|----|---|---------------|---------------|----|----|
| 부  | 김창만(金彰滿)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사망</span> | 1944년 02월 02일 | 440202-1***** | 남  | 慶州 |
| 모  | 김진늬(金鎭沔)  | 1956년 03월 05일 | 560305-2***** | 여  | 金海 |

위 가족관계증명서(일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유진오



합계 9호증

※ 위 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현출한 일반증명서입니다.

발급시각 : 18시 05분  
신청인 : 김준호



주민등록표  
(초본)

이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원본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신창인:김준호 (1977-04-19)  
전화:031-632-4001  
용도 및 목적:



2023년 05월 09일

경기도 이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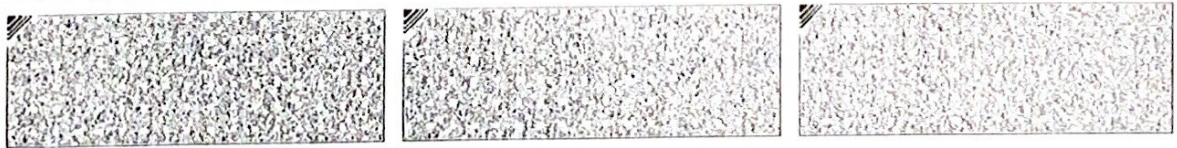
|                  |   |   |  |
|------------------|---|---|--|
| 성명(한자)           | 김준호 (金準浩)   | 주민등록번호  | 770419-1932311                           |
| 인 직 사 항 변 경 내 용  |   |   |  |
| == 공 란 ==        |   |   |  |
| "주민등록번호 정정내역 없음" |   |   |  |
| 번호               | 주소  | 발생일 / 신고일                                     | 세대주및관계 등록상태                              |
| 1                | 제주도 제주시 삼도일동 722-8                                    | -----   | 1981-05-27<br>신규등록                       |
| 2                | 제주도 제주시 삼도일동 722-5                                    | 1981-08-01                                    | 1981-08-01<br>전입                         |
| 3                | 제주도 제주시 삼도일동 517-10                                   | 1982-02-01                                    | 1982-01-31<br>전입                         |
| 4                | 제주도 제주시 삼도일동 719-11                                   | 1984-02-01                                    | 1984-01-31<br>전입                         |
| 5                | 제주도 제주시 아라일동 1683<br>아라주공아파트 108-309                  | 1992-05-11                                    | 1992-05-19<br>전입                         |
| 6                | [제주시조례제1473호]   |   |  |
| 7                | 제주도 제주시 아라일동 1683<br>아라주공아파트 108-309                  | -----   | 1992-10-14<br>통반변경                       |
| 8                | 제주도 제주시 아라일동 1745<br>아라미화아파트 1-202                    | 1998-08-05                                    | 1998-08-05<br>전입                         |
| 9                | [제주시조례 제2011호(2004.7.30)로통반개정]                        |   |  |
| 10               | 제주도 제주시 아라일동 1745<br>아라미화아파트 1-202                    | -----   | 2004-07-30<br>통반변경                       |
| 병역사항             | 역종 [면역]<br>입영(입관)일 [1997-10-06]<br>전역근기 [동소31320-299] | 군번 [해군]<br>병과/주특기 [17-1]<br>전역일자 [2000-02-15] | 군번 [979600189]<br>계급 [이병]<br>전역사유 [복무과거] |

김준호 10호증 1



경기도 이천시

※ 1. 본인이나 세대원은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부24(www.gov.kr)에서 위 발급화인번호로 내용의 진위여부를 발급일로부터 9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식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화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3. 확인의 달인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전자이미지확인을 인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확인의 객상은 직책 또는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주신고번호가 기재됩니다.  
5. 광화한 가족관계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아닌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갑 제10-1호증



# 주민등록표 (초본)

이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원본 내용과  
 불일치함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전화: 031-632-4001  
 신청인: 김준호 (1977-04-19)  
 용도 및 목적:

2023년 05월 09일

## 경기도 이천시장

| 성명(한자)      | 김준호 (金準浩)                                 | 주민등록번호     | 770419-1932311                     |
|-------------|---|------------|------------------------------------|
| 번호          | 주소  | 발생일 / 신고일  | 세대주및관계<br>등록상태                     |
| 11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547-8-103                    | 2005-01-02 | 2005-04-02<br>김준호의 본인<br>전입        |
| 12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547-8-103                    | -----      | 2005-10-10<br>부년신출식권발소<br>김준호의 본인  |
| 13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547-8-103                    | -----      | 2005-10-24<br>재등록<br>김준호의 본인       |
| 14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502-11                    | 2005-10-24 | 2005-10-24<br>김준호의 본인<br>전입        |
| 15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1745-아라비화아파트 1-202       | 2007-03-26 | 2007-03-26<br>김장만의 자녀<br>전입        |
| 16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544-휴먼시아 105-209          | 2010-03-03 | 2010-03-03<br>권준민의 동기인<br>전입       |
| 17          | 경기도 이천시 청전동 424-6-202                     | 2010-05-07 | 2010-05-07<br>김준호의 본인<br>전입        |
| 18          |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427-27-101                    | 2011-05-09 | 2011-05-09<br>김준호의 본인<br>전입        |
| 19          | [별표9774호(09.12.10) 도로명주소법, 공법관계의 주소변경]    |            |                                    |
| 20          | 경기도 이천시 시희로96번길 24, B01호 (장전동)            | -----      | 2011-10-31<br>도로명주소<br>김준호의 본인     |
| 21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현방로80번길 47, 103호              | 2012-07-02 | 2012-07-02<br>김준호의 본인<br>전입        |
| 22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이여로 260-16, 103동 201호 (한솔아파트) | 2013-11-22 | 2013-11-22<br>김준호의 본인<br>전입<br>거주자 |
| == 이하 여백 == |   |            |                                    |

- ※ 1. 본인이나 세대원은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2. 정부24(www.gov.kr)에서 위 발급회원번호로 내용의 전위여부를 발급일로부터 9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사 하단의 바코드로도 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사확인 프로그램을)을 할 수 있습니다.
- 3. 적인의 날인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자이미지관인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적인의 색상은 적색 또는 흑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 4.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기재됩니다.
- 5. 정확한 가족관계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아닌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갑 제10-1호증



# 주민등록표 (등본)

이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원본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전화: 031-632-4001  
 신청인: 김준호 (1977-04-19)  
 용도 및 목적: 2023년 05월 09일

## 경기도 이천시

|             |  |                             |                                    |
|-------------|--|-----------------------------|------------------------------------|
| 세대주 성명(한자)  | 김준호 (金準浩)                                    | 세대구성<br>사유 및 일자             | 전입<br>2010-05-07                   |
| 주소          |  |                             | 발생일 / 신고일<br>면동사유                  |
| 현주소: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이어로 260-16,<br>103동 201호 (한솔아파트) |                             | 2013-11-22 2013-11-22<br>전입        |
| == 공 란 ==   |  |                             |                                    |
| 번호          | 세대주<br>관계                                    | 성명(한자)<br>주민등록번호            | 발생일 / 신고일<br>등록상태<br>면동사유          |
| 1           | 본인   | 김준호 (金準浩)<br>770419-1932311 | 2010-05-07 2010-05-07<br>기주자<br>전입 |
| 2           | 자녀   | 김유진 (金裕鎭)<br>090414-3932913 | 2010-05-07 2010-05-07<br>기주자<br>전입 |
| == 이하 여백 == |  |                             |                                    |

갑제 10 호증 2



## 경기도 이천시

- \* 1. 본인이나 세대원은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2. 정부24(www.gov.kr)에서 위 발급확인번호로 내용의 진위여부를 발급일로부터 9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 이란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를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 3. 직인의 인원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전자이미지인증을 인제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인의 직상은 직책 또는 특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 4.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기재됩니다.
- 5. 정확한 가족관계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아닌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갑 제10-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제출용] -

고유번호 2201-1996-922613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21

| 【 표 제 부 】 ( 토지의 표시 ) |            |                    |     |       |   |
|----------------------|------------|--------------------|-----|-------|---|
| 표시번호                 | 접 수        | 소 제 지 번            | 지 목 | 면 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1<br>(전-1)           | 1980년4월14일 | 제주도-제주시-해안동-21     | 임야  | 3527㎡ |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09월 20일 전산이기 |
| 2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21 | 임야  | 3527㎡ |   |

| 【 갑 구 】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                   |                   |   |  |
|------------------------|--------------|-------------------|-------------------|---|--|
|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 1<br>(전 3)             | 소유권이전        | 1988년2월11일 제6242호 | 1988년2월10일 매매     | 소유자 김창만 440202-*****<br>제주시-삼도원동-719-11<br>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br>의하여 2000년 09월 20일 전산이기 |  |
| 1-1                    | 1번등기명의인표시 변경 |                   | 2013년6월3일 전기      | 김창만의 주소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br>부발중앙로46번길 46, 103동 1303호<br>(효양아파트)<br>2013년7월4일 부기                    |  |
| 2                      | 소유권이전        | 2013년7월4일 제57058호 | 2013년7월4일 증여      | 소유자 김미영 750512-*****<br>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부발중앙로46번길<br>46, 103동 1303호 (효양아파트)                       |  |
| 3                      | 카처분          | 2013년9월6일 제74216호 | 2013년9월6일 제주지방법원의 | 피보전권리-증여계약해제로 인한<br>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  |

갑 제 11<sup>1</sup>/<sub>2</sub> 호증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22020222001193031010969291SKY0226944322113107A1112      발급확인번호 AMLV-WYPW-6133      발행일 2023/03/29

갑 제 11<sup>1</sup>/<sub>2</sub>-1호증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21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      |                |                        | 카처분결정(2013가단2126)                         | 채권자 김창만 440202-*****<br>제주-제주시-과원로-11-206동-402호(노형동, 부영아파트)<br>금지사항-매매, 증여, 전세권, 지당권, 압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
| 4    | 3면가처분등기말소      | 2015년12월1일<br>제126100호 | 2015년11월19일<br>취소결정                       |   |
| 5    | 강제경매개시결정       | 2017년1월19일<br>제7130호   | 2017년1월18일<br>제주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2017타경386) | 채권자 김창만 440202-*****<br>경상남도-밀양시-하남읍-수산재방길-173 (수산라)  |
| 6    | 5면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 | 2018년1월17일<br>제6619호   | 2017년12월27일<br>취소사각결정                     |   |

|   |
|---|
| <b>【 을 구 】</b>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br>기록사항 없음 |
|---|

-- 이 하 이 백 --

관할등기소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1,000원 영수함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시기 2023년 3월 29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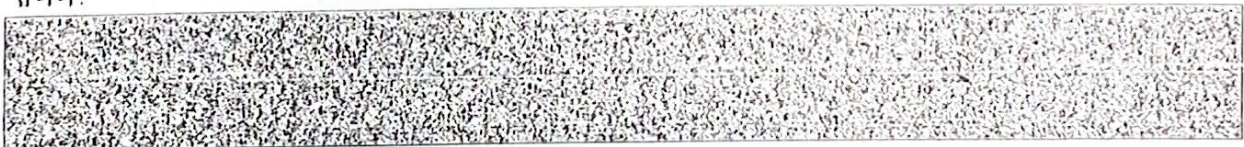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 기록사항 없는 갑구, 을구는 '기록사항 없음' 으로 표시함.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22020222001193031010969291SKY0226944322213107A1112      발급확인번호 AALV-WYPW-6133      발행일 2023/03/29

갑 제11-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제출용] -

고유번호 2201-1996-621874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2817

| 【 표 제 부 】 ( 토지의 표시 ) |            |                      |     |       |   |
|----------------------|------------|----------------------|-----|-------|---|
| 표시번호                 | 접 수        | 소 제 지 번              | 지 목 | 면 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1<br>(선-2)           | 1999년9월17일 | 제주도-제주시-노형동-2817     | 전   | 2245㎡ |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07월 31일 전산이기 |
| 2                    |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동-2817 | 전   | 2245㎡ | 2006년7월1일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2006년7월3일 등기           |
| 3                    | 2016년7월1일  |                      |     |       | 합병으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2812에 이기               |
|                      |            |                      |     |       | 3 번 등기하였으므로 본 등기기록 폐쇄 2016년7월1일                 |

김 장 만  
//  
2016.7.1

| 【 갑 구 】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                   |               |  |  |
|------------------------|--------------|-------------------|---------------|--|--|
|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 1<br>(선 1)             | 소유권이전        | 1975년5월23일 제8404호 | 1975년5월14일 매매 | 소유자 김장만<br>제주시-삼도동-721-8                             |  |
|                        |              |                   |               |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07월 31일 전산이기      |  |
| 1-1                    | 1번등기명의인표시 변경 |                   | 2013년6월3일 전기  | 김장만의 주소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부발중앙로46번길 46, 103동 1303호 (효양아파트) |  |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 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2202022001193031010966292SKY0218019322174437A1112

발급확인번호 AALV-WZGR-8748

발행일 2023/03/29

갑 제1<sup>43</sup>-2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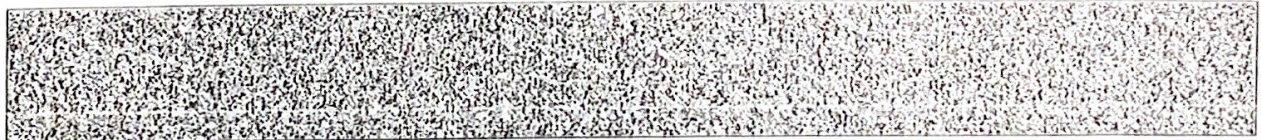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2817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      |                 |                         |  | 2013년7월4일 부기  |
| 2    | 소유권이전           | 2013년7월4일<br>제57058호    | 2013년7월4일<br>증여                                | 소유자 김미영 750512-*****<br>경기도-이천시-부발읍-부발중앙로46번길<br>46-103동-1303호-(효양아파트)  |
| 2-1  | 2번등기명의인표시<br>변경 | 2015년12월14일<br>제131269호 | 2015년7월24일<br>진기                               | 김미영의 주소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br>부발중앙로46번길 46, 105동<br>903호(효양아파트)  |
| 3    | 카처분             | 2013년9월6일<br>제74216호    | 2013년9월6일<br>제주지방법원의<br>카처분결정(2013<br>3카단2126) | 피보전권리-증여계약해제로-안한<br>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br>채권사 김장만 440202-*****<br>제주-제주시-과원로-11-206동-<br>402호(노형동, 부영아파트)<br>금지사항-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br>임차권의 설정-기타원채의 처분행위<br>금지 |
| 4    | 3번카처분등기말소       | 2015년12월1일<br>제126100호  | 2015년11월19일<br>취소결정                            |   |
| 5    | 소유권이전청구권기<br>등기 | 2015년12월14일<br>제131270호 | 2015년12월14일<br>매매예약                            | 기등기권자 주식회사블룸하우징<br>220111-0131747<br>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157,<br>2층(연동)   |
|      | 소유권이전           | 2016년4월4일<br>제38870호    | 2016년3월17일<br>매매                               | 소유자 주식회사블룸하우징 220111-0131747<br>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157,<br>2층(연동)<br>거래가액 금1,358,000,000원  |

【 을 구 】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기록사항 없음

-- 이 하 여 백 --



제주지법 2023가단58574 유류분 반환 2023.05.11 제출 원본과 상위 없음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2817

관할등기소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1,000원 영수함

이 증명서는 폐쇄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23년 3월 29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진산운영책임관



- \* 실선으로 그려진 부분은 발소사항을 표시함.
-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 기록사항 없는 칸, 을구는 '기록사항 없음' 으로 표시함.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22020222001193031010966292SKY0218019322374437A1112

발급확인번호 AALV-WZGR-8748

발행일 2023/03/29

갑 제11<sup>3/3</sup>-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제출용] -

고유번호 2201-2004-001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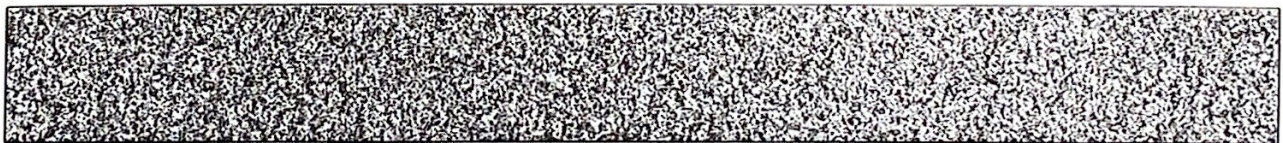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698

| 【 표 제 부 】 ( 토지의 표시 ) |            |                     |     |       |   |
|----------------------|------------|---------------------|-----|-------|---|
| 표시번호                 | 접 수        | 소 재 지 번             | 지 목 | 면 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1                    | 2004년1월31일 | 제주도 제주시 해안동 698     | 임야  | 3828㎡ |   |
| 2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698 | 임야  | 3828㎡ | 2006년7월1일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br>2006년7월12일 등기 |

| 【 갑 구 】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                   |                |   |  |
|------------------------|--------------|-------------------|----------------|---|--|
|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 1                      | 소유권보존        | 2004년1월31일 제7586호 |                | 소유자 김창만 440202-*****<br>제주시 아라일동 1745-아라미화아파트 1-202                           |  |
| 1-1                    | 1번등기명의인표시 변경 | 2013년9월2일 제72752호 | 2013년8월30일 전기  | 김창만의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원로 11, 206동 402호 (노형동, 부영아파트) //                         |  |
| 1-2                    | 1번등기명의인표시 변경 |                   | 2016년10월13일 전기 | 김창만의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수산제방길 173<br>2017년2월2일 부기                                |  |
| 2                      | 소유권이전청구권카 등카 | 2013년9월2일 제72753호 | 2013년9월2일 증여계약 | 카등기권자 김은영 740128-*****<br>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원로 11, 206동 402호 (노형동, 부영아파트)          |  |
| 3                      | 2번가등기말소      | 2017년1월18일 제6700호 | 2015년9월8일 판결   |   |  |
| 4                      | 소유권이전        | 2017년2월2일 제12740호 | 2017년2월2일 매매   | 소유자 이소영 710302-*****<br>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평촌로 39, 1207동<br>1001호(동백동, 호수마을동보노빌리티) |  |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22020222001203031010040301E0X0010119BYE175170X1112

발급확인번호 AALV-XTGA-0758

발행일 2023/03/30

갑 제11<sup>2</sup>-3호증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인동 698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      |      |    |      | 거래가액 금33,000,000원 |

|                               |
|-------------------------------|
| 【 을 구 】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 기록사항 없음                       |

-- 이 하 이 백 --

관할등기소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1,000원 영수함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23년 3월 30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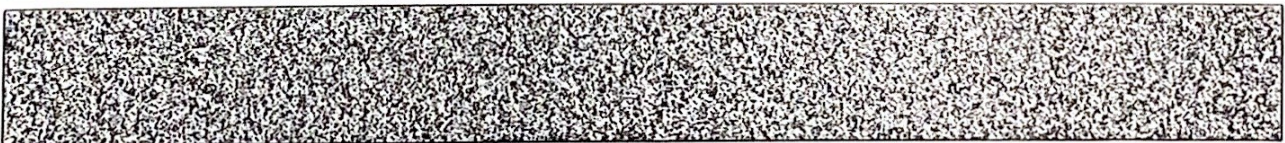
전산운영책임관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 기록사항 없는 갑구, 을구는 '기록사항 없음' 으로 표시함.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22020222001203031010040301EON0010119BYE275170X1112

발급확인번호 AALV-XTGA-0758

발행일 2023/03/30

갑 제1<sup>1/2</sup>-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 [제출용] -

고유번호 2201-1996-973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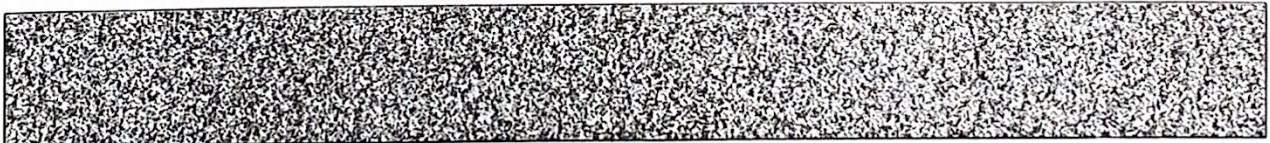


[집합건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6075-2외 1필지 아라미화아파트 제1동 제2층 제202호

| 【 표 제 부 】 ( 1동의 건물의 표시 ) |           |  |   |   |
|--------------------------|-----------|--|---|---|
| 표시번호                     | 접 수       |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 건 물 내 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1<br>(전 1)               | 1993년2월2일 | 제주도-제주시-아라일동-1745, 1745-3<br>아라미화아파트 제1동     | 쿨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br>7층<br>아파트, 주차장, 소매점<br>(가형, 나형, 다형, 라형, 바형)<br>1층-847.27㎡<br>2층-918.49㎡<br>3층-918.49㎡<br>4층-918.49㎡<br>5층-918.49㎡<br>6층-918.49㎡<br>7층-883.74㎡<br>지층-1553.52㎡ | 도면편질장 제69책제50장  |
|                          |           |  |   | 부동산등기법 제1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함<br>2000년 09월 06일 전산                      |
| 2                        |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라일동-1745, 1745-3<br>아라미화아파트 제1동 | 쿨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br>7층<br>아파트, 주차장, 소매점<br>(가형, 나형, 다형, 라형, 바형)<br>1층-847.27㎡<br>2층-918.49㎡<br>3층-918.49㎡<br>4층-918.49㎡<br>5층-918.49㎡<br>6층-918.49㎡<br>7층-883.74㎡<br>지층-1553.52㎡ | 2006년7월1일<br>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br>안하여<br>2006년7월20일 등기<br>도면편질장 제69책제50장 |
| 3                        | 2011년6월9일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라일동-1745, 1745-3                | 쿨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br>7층   | 용도변경  |

갑 제 11-4 호 증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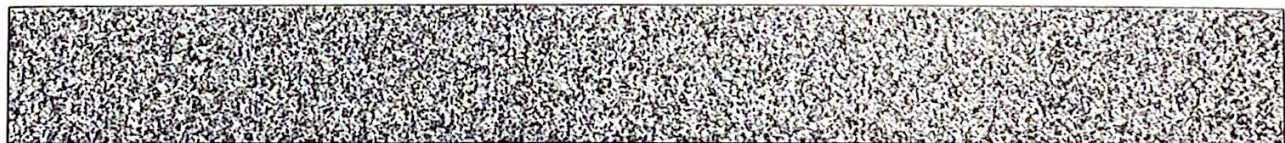
발행번호 22020222001193031010969301E0N0734119BYE154580N1112      발급확인번호 AALV-XTHQ-4540      발행일 2023/03/30

갑 제11<sup>6</sup>-4호증



[집합건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6075-2외 1필지 아라미화아파트 제1동 제2층 제202호

| 표시번호 | 집 수 |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 건 물 내 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      |     | 아라미화아파트 제1동  | 아파트,<br>제1,2층근린생활시설<br>(가형, 나형, 다형, 라형,<br>마형)<br>1층 847.27㎡<br>2층 918.49㎡<br>3층 918.49㎡<br>4층 918.49㎡<br>5층 918.49㎡<br>6층 918.49㎡<br>7층 883.74㎡<br>지층 1553.52㎡                        |                         |
| 4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br>아라일동 1745, 1745-3<br>아라미화아파트 제1동<br>[도로명주소]<br>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br>아라12길 8 | 질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br>7층<br>아파트,<br>제1,2층근린생활시설<br>(가형, 나형, 다형, 라형,<br>마형)<br>1층 847.27㎡<br>2층 918.49㎡<br>3층 918.49㎡<br>4층 918.49㎡<br>5층 918.49㎡<br>6층 918.49㎡<br>7층 883.74㎡<br>지층 1553.52㎡ | 도로명주소<br>2011년12월28일 등기 |
| 5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br>아라일동 6075-2, 6076<br>아라미화아파트 제1동<br>[도로명주소]<br>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br>아라12길 8 | 질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br>7층<br>아파트,<br>제1,2층근린생활시설<br>(가형, 나형, 다형, 라형,<br>마형)<br>1층 847.27㎡<br>2층 918.49㎡<br>3층 918.49㎡<br>4층 918.49㎡<br>5층 918.49㎡<br>6층 918.49㎡<br>7층 883.74㎡<br>지층 1553.52㎡ | 도시개발사업<br>2014년4월3일 등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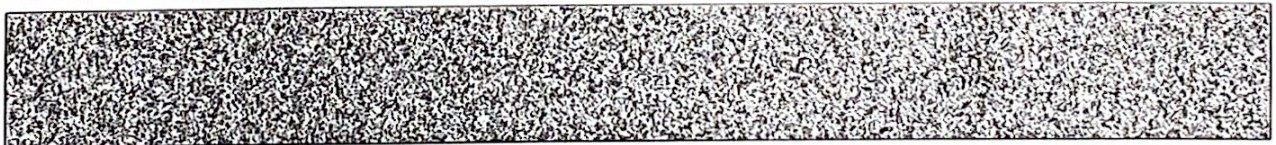
[집합건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6075-2와 1필지 아라미화아파트 제1동 제2층 제202호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 표시번호       | 소재지번   | 지목     | 면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 1<br>(전 1) | 1. 제주도 제주시 아라일동 1745<br>2. 제주도 제주시 아라일동 1745-3         | 대<br>대 | 2453㎡<br>1794㎡ | 1993년2월2일                                       |
|            |  |        |                |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09월 06일 전산이기 |
| 2          |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1745                               | 대      | 2453㎡          | 2006년7월1일 1토지 행정구역명칭변경<br>2006년7월4일             |
| 3          |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1745-3                             | 대      | 1794㎡          | 2006년7월1일 2토지 행정구역명칭변경<br>2006년7월4일             |
| 4          |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6075-2<br>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6076 | 대      | 2565.5㎡        | 1,2토지 도시개발사업<br>2014년4월3일 등기                    |
|            |  | 대      | 1628.7㎡        |   |

【 표 제 부 】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 표시번호        | 접수          | 건물번호         | 건물내역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 1<br>(전 1)  | 1993년2월2일   | 제2층 제202호    | 철근콘크리트조<br>76.28㎡                               | 도면연철장 제69책제50장                                  |
|             |             |              |   |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09월 06일 전산이기 |
| ( 대지권의 표시 ) |             |              |   |   |
| 표시번호        | 대지권종류       | 대지권비율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 1<br>(전 1)  | 1, 2 소유권대지권 | 4247분의 32.34 | 1993년1월21일 대지권<br>1993년2월2일                     |   |
|             |             |              |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09월 06일 전산이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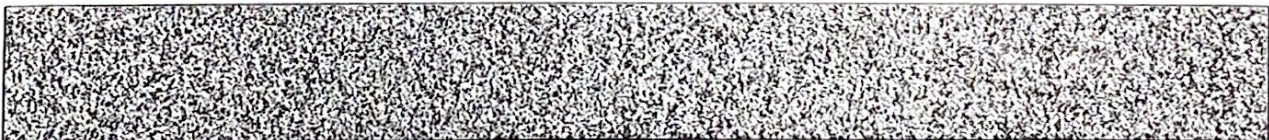




[집합건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6075-2외 1필지 아라미화아파트 제1동 제2층 제202호

| 【 갑 구 】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                         |                   |   |
|------------------------|-----------------|-------------------------|-------------------|---|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1<br>(전 3)             | 소유권이전           | 1998년8월14일<br>제51301호   | 1998년8월13일<br>매매  | 소유자 김창만 440202-*****<br>제주시 아라일동 1745 아라미화아파트 1-202                                     |
|                        |                 |                         |                   |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br>의하여 2000년 09월 06일 전산이기                                      |
| 1-1                    | 1번등기명의인표시<br>변경 |                         | 2013년6월3일<br>전기   | 김창만의 주소 경기도 인천시 부발읍<br>부발중앙로46번길 46, 103동 1303호<br>(효양아파트)<br>2013년8월23일 무기             |
| 2                      | 소유권이전           | 2013년8월23일<br>제70628호   | 2013년8월23일<br>매매  | 소유자 한원용 681019-*****<br>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문로14길<br>35(일도이동)<br>거래가액 금85,000,000원             |
| 3                      | 소유권이전           | 2014년11월24일<br>제104129호 | 2014년11월10일<br>매매 | 소유자 이훈정 711129-*****<br>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성권동로2관<br>47,501호 (외동, 덕용맨션)<br>거래가액 금136,000,000원 |
| 3-1                    | 3번등기명의인표시<br>변경 | 2019년10월4일<br>제86312호   | 2018년7월19일<br>전기  | 이훈정의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br>1049, 104동 502호 (가능동, 스타파크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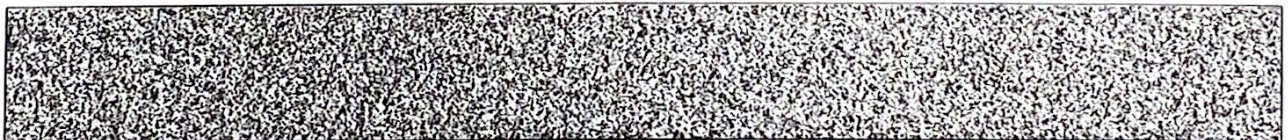
| 【 을 구 】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                       |                              |  |
|-------------------------------|----------|-----------------------|------------------------------|--|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1<br>(전 2)                    | 근저당권설정   | 1998년6월12일<br>제37329호 | 1998년6월11일<br>설정계약           | 채권최고액 금39,000,000원<br>채무자 경인방<br>제주시 아라1동 1745 아라미화아파트 1-202<br>근저당권자 어도새마을금고 220144-0001066<br>제주시 어도2동 1176-74 |
| 1-1<br>(전 2-1)                | 1번근저당권변경 | 1998년8월14일<br>제51302호 | 1998년8월13일<br>확정채무의<br>면책작인수 | 채무자 김창만<br>제주시 아라일동 1745 아라미화아파트<br>1-202  |





[집합건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6075-2의 1필지 아라비화아파트 제1동 제2층 제202호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      |              |                      |                  |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번 내지 1-1번 등기를 2000년 09월 06일 전산이기  |
| 2    | 1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2001년8월27일 제57748호   | 2001년8월27일 해지    |   |
| 3    | 근저당권설정       | 2009년12월7일 제75030호   | 2009년12월7일 설정계약  | 채권최고액 금33,000,000원<br>채무자 백진환<br>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754-4 부영아파트 206-402<br>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10136-0027690<br>서울특별시 중구 중경로1가 75 (연복로지점)       |
| 4    | 3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2011년6월8일 제42235호    | 2011년6월8일 해지     |   |
| 5    | 근저당권설정       | 2013년8월23일 제70629호   | 2013년8월23일 설정계약  | 채권최고액 금64,800,000원<br>채무자 한원용<br>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문로14길 35(일도아동)<br>근저당권자 제주시농업협동조합 220136-0000403<br>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133(일도아동) (동문지점)        |
| 6    | 근저당권설정       | 2014년11월24일 제104130호 | 2014년11월24일 설정계약 | 채권최고액 금77,000,000원<br>채무자 이훈정<br>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2길 47,501호 (와동, 덕용맨션)<br>근저당권자 주식회사우리는행 110111-0023393<br>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제주지점) |
| 7    | 5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2014년11월24일 제104131호 | 2014년11월24일 해지   |   |
| 8    | 근저당권설정       | 2019년10월4일 제86313호   | 2019년9월19일 설정계약  | 채권최고액 금55,000,000원<br>채무자 이훈정<br>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049,104동 502호  |





[집합건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6075-2외 1필지 아라미화아파트 제1동 제2층 제202호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      |      |    |      | (가능동,스타파크빌)<br>근저당권자 주식회사우리은행 110111-0023393<br>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br>( 제주금융센터 ) |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1,000원 영수함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23년 3월 30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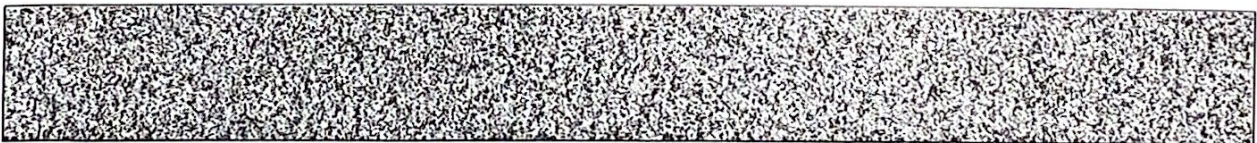
전산운영책임관



- \* 실선으로 그려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 기록사항 없는 갑구, 을구는 '기록사항 없음' 으로 표시함.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22020222001193031010969301E0X0734119BYE654580X1112

발급확인번호 AALV-XTHQ-4540

발행일 2023/03/30

갑 제1<sup>16</sup>-4호증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3가단16007 소유권말소등기 등  
 원 고 김창만 (440202-1932313)  
 제주도 과원로 11, 206동 402호 (노형동, 부영아파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봉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용학

피 고 1. 김미영 (750512-2932330)  
 이천시 부발읍 부발중앙로46번길 46, 105동 903호 (효양아파트)  
 2. 한원용 (681019-1932111)  
 제주도 동문로14길 35 (일도이동)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흥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수진

변 론 종 결 2014. 9. 19.  
 판 결 선 고 2014. 11. 14.

갑 제 12 호 증 1

주 문

1. 피고 김미영은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2014. 4.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피고 김미영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한원용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미영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김미영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한원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피고 김미영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4.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5705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4,625,683 원 및 그 중 30,189,683원에 대하여는 2013. 5. 7.부터, 나머지 4,435,820원에 대하여는 2013. 8. 19.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위적으로 피고 한원용은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23.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706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김미영은 주문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피고 김미영은 원고의 셋째 딸이며 소외 김은영은 원고의 둘째 딸이다.
- 나. 원고의 소유이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2013. 7. 4.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김미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





고, 원고의 소유이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은 2013. 8. 23.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한원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한편 피고 김미영은 2013. 8. 22. 피고 한원용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 대금 8,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의 소유인 제주시 해안동 698 임야 3828㎡는 소외 김은영 명의로 2013. 9. 2.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 ①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는 의사무능력 상태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 ② 이 사건 증여는 피고 김미영이 원고를 부양할 것을 대가로 한 부담부 증여인데 피고가 위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민법 제561조에 기해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로 이 사건 증여를 해제하였으며, ③ 피고 김미영은 원고의 딸로 증여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민법 제556조에 기해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로 이 사건 증여를 해제하였고, ④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원고가 민법 제557조에 기해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로 이 사건 증여를 해제하였으므로, ⑤ 이 사건 증여는 원고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와 만성 알코올중독증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가 여생을 보낼 최소한의 재산조차 없게 되어 버렸으므로 민법 제103조에 기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김미영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판단

① 의사무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만성 알코올중독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경미한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을 뿐이고, 원고는 원고 본인에 대한 신문과정에서의 질문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답변을 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부담부 증여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부담부 증여라 함은 수증자가 증여를 받음과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관으로 하는 증여로서, 수증자가 행하는 어떤 급부가 증여계약의 부관인 부담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을 것을 요하고, 따라서 수증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기대하고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급부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못한 때에는 이는 증여의 동기나 행위기초에 불과할 뿐 부담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증여에 민법 제561조 상대부담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대립하는 의사가 있고 그것이 말 또는 행동 등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합치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실인정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4-0041857622-CB845

갑 제12-1호증



2010. 5. 27. 선고 2010다5878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김미영에게 원고 생존시까지 원고를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2호증과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3. 6. 1. 원고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피고 김미영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2013. 6. 10. 이천시 부발읍사무소에서 직접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용도란에 '김미영에게 준다'라고 기재한 사실,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의 증여란에 본인이 자필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가 부담부 증여라는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③ 민법 제556조, 제557조에 기한 해제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558조는, 민법 제556조, 제55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7. 4.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김미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져 이 사건 증여는 2013. 7. 4. 이행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증여 해제는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 김미영에게 송달된 2013. 10. 14.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이 사건 증여 해제 이전에 이미 이행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민법 제556조, 제557조에 기한 이 사건 증여의 해제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④ 이 사건 증여가 민법 제103조에 기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와 만성 알코올 중독 증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증여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단정하고 어렵







고,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외에도 원고는 제주시 해안동 698 입야 3828㎡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가 남은 여생을 보낼 최소한의 재산조차 없게 되어 버렸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 소유의 예금 등에 관한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김미영이 2013. 5. 7.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계약을 해지하여 인출한 돈 30,189,863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원고 명의로 체크카드를 만들어 2013. 4. 17.경부터 2013. 8. 19.경까지 원고의 돈 4,435,82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각 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 본인신문 결과 원고가 위 돈 중 일부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김미영이 위 원고 주장의 돈을 모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힘들고 피고 김미영이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는 부권대리인인 피고 김미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 한원용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매매가 유효라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김미영에게 매매대금을 증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김미영은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매매대금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① 피고 한원용에 대한 무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4.09.13. 선고 94다1016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가 피고 김미영의 무권대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7호증과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6. 1. 원고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피고 김미영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 피고 김미영은 2013. 8. 20. 이천시 부발읍사무소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피고 한원용에게 2013. 8. 23.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가 무권대리에 기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 김미영에 대한 매매대금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보아야 하나, 그 수령한 매매대금에 권리는 소유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수령한 피고 김미영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8,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매매대금 수령일인 2013. 8.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2014. 4. 1.까지는 민법 소정의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김미영은 원고의 동의를 받고 또는 원고의 뜻에 따라 위 매매대금을 모두 사용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미영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김미영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한원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

최복규





### 별 지 (1) 목 록

- 1. 제주시 해안동 21  
    임야 3,527㎡
  
- 2. 제주시 노형동 2817  
    전 2,245㎡ (이상)

### 별 지 (2) 목 록

- 1. 1동의 건물의 표시  
    제주시 아라일동 1745, 1745-3 아라미화아파트 제1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아파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2층 제202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76.28㎡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제주시 아라일동 1745   대 2,453㎡  
                  2. 제주시 아라일동 1745-3   대 1,794㎡  
    대지권의 종류: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4,247분의 32.34 (이상)





# 정본입니다.

2014. 11. 20.

제주지방법원

법원주사 고경수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4-0041857622-CB845

갑 제12-1호증



**빠르고 편리한 고품질 사법서비스  
대법원 전자소송**

본 사이트에서 제공된 사건정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특허 등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판결문이나 사건기록을 모두 인터넷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일반내용

사건진행내용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16007

**기본내용**

|       |                     |      |                  |
|-------|---------------------|------|------------------|
| 사건번호  | 2013가단16007         | 사건명  | 소유권말소등기 등        |
| 원고    | 김창만                 | 피고   | 김미영 외 1명         |
| 재판부   | 민사3단독               |      |                  |
| 접수일   | 2013.10.02          | 증국결과 | 2014.11.14 원고일부승 |
| 원고소가  | 87,931,366          | 피고소가 |                  |
| 수리구분  | 제소                  | 병합구분 | 없음               |
| 상소인   | 원고, 피고, 쌍방          | 상소일  | 2014.12.04       |
| 상소각하일 |                     | 폐기여부 | 기록폐기됨            |
| 인지액   | 400,600원            |      |                  |
|       | 송달료,보관금 중결에 따른 잔액조회 |      |                  |
| 판결도달일 | 2014.11.21          | 확정일  | 2015.09.23       |

감 제 12-2호증 >

**심급내용**

| 법원     | 사건번호      | 결과              |
|--------|-----------|-----------------|
| 제주지방법원 | 2014나2907 | 2015.09.02 항소기각 |

**최근기일내용**

| 일자         | 시각    | 기일구분   | 기일장소        | 결과    |
|------------|-------|--------|-------------|-------|
| 2014.09.19 | 14:00 | 변론기일   | 5층 제501호 법정 | 속행    |
| 2014.09.29 | 14:00 | 조정기일   | 3층 조정실      | 조정불성립 |
| 2014.10.31 | 10:00 | 판결선고기일 | 5층 제501호 법정 | 선고연기  |
| 2014.11.14 | 10:00 | 판결선고기일 | 5층 제501호 법정 | 판결선고  |

최근 기일 순으로 일부만 보입니다. 반드시 상세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 제 12-2호증**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 일 자        | 내 용                        |
|------------|----------------------------|
| 2015.09.15 | 피고1 소송대리인 고광수 확정증명         |
| 2015.09.24 | 원고1 소송대리인 이연봉 판결정본         |
| 2015.09.24 | 원고1 소송대리인 이연봉 집행문/송달/확정증명  |
| 2015.10.27 | 법원 제주지방법원 법원사무관 소송기록송부서 제출 |

최근 제출서류 순으로 일부만 보입니다. 반드시 상세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사건내용

| 법 원    | 사건번호      | 결 과  |
|--------|-----------|------|
| 제주지방법원 | 2015카확168 | 신청사건 |

당사자내용

| 구 분 | 이 름    | 종국결과             | 판결도달일      | 확정일        |
|-----|--------|------------------|------------|------------|
| 원고  | 1. 김창만 |                  | 2014.11.21 | 2015.09.23 |
| 피고1 | 1. 김미영 |                  | 2014.11.21 | 2015.09.23 |
| 피고2 | 2. 한원용 | 2014.11.14 원고일부승 | 2014.11.21 | 2014.12.06 |

대리인내용

| 구 분        | 이 름          |
|------------|--------------|
| 원고1 소송대리인  | 변호사 이연봉      |
| 피고1 소송대리인  | 변호사 고광수      |
| 원고1 소송복대리인 | 복대리인 변호사 김용학 |
| 피고1 소송복대리인 | 복대리인 변호사 김수진 |



# 제 주 지 방 법 원

## 판 결

사 건 2015가단729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원 고 김창만 (440202-1932313)  
 제주시 한림읍 중산간서로 4135 (상명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봉, 김용학  
 피 고 김은영 (740128-2932316)  
 제주시 화삼로 12, 205동 501호 (화북이동, 삼화사랑으로부영2차  
 아파트)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9. 8.

감 제 13 호 증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해안동 698 임야 3,828㎡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3. 9.
2. 접수 제727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이정권

이정권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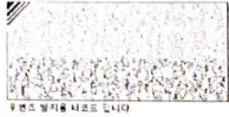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이며, 피고는 원고의 친딸입니다.

2.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루어진 피고명 의의 증여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에 관하여(갑제1호증 동기부등본 갑구 순위번호 2)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그리고 이 사건 가등기는 실질적으로 증여계약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가등기입니다.

나. 한편, 원고는 원고소유로 되어 있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원 고 소유의 소유였던 부동산과 관련하여 친딸인 소외 김미영과 사이에 소유 권 문제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되어 2013. 10. 2. 김미영을 상대로 제주지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 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원 2013가단 160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실이 있고, 위 소송은 제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제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와 소외 김미영의 항소에 따라 현재 위 소송은 제주지방법원 2014나 2907호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감제2호증 판결, 감제3호증 대법원 사건진행내역).

다. 원고는 소외 김미영과 사이에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되므로 인하여 그 대응에 앞서 이 사건 부동산만큼은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따라 위 민사 소송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전행위로서 형식적으로 피고명의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 가등기 경료 이후 원고는 소외 김미영을 경기이천경찰서에 시문서위조 등의 죄명으로 형사고소 하였고 [원고가 소외 김미영을 상대로 고소하였던 위 형사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2013형제 12051호)에서 2014. 1. 8.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국되었습니다], 그 이후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 즉, 이 사건 가등기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증여계약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전행위로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가등기이므로 옹당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상과 같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등본입니다.

2023. 3. 30.

제주지방법원

법원주사보 조현택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21번지

| 신청대상 토지 |                 |      | 확인내용     |         |            |    |
|---------|-----------------|------|----------|---------|------------|----|
| 가격기준연도  | 토지소재지           | 지번   | 개별공시지가   | 기준일자    | 공시일자       | 비고 |
| 202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 21번지 | 29,500 원 | 01월 01일 | 2022/04/29 |    |
| 2021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 21번지 | 26,000 원 | 01월 01일 | 2021/05/31 |    |
| 202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 21번지 | 24,000 원 | 01월 01일 | 2020/05/29 |    |
| 2019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 21번지 | 23,000 원 | 01월 01일 | 2019/05/31 |    |
| 201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 21번지 | 22,000 원 | 01월 01일 | 2018/05/31 |    |
| 2017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 21번지 | 21,500 원 | 01월 01일 | 2017/05/31 |    |
| 201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 21번지 | 20,000 원 | 01월 01일 | 2016/05/31 |    |
| 2015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 21번지 | 17,000 원 | 01월 01일 | 2015/05/29 |    |
| 2014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 21번지 | 14,000 원 | 01월 01일 | 2014/05/30 |    |
| 201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 21번지 | 13,000 원 | 01월 01일 | 2013/05/31 |    |
| 201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 21번지 | 13,000 원 | 01월 01일 | 2012/05/31 |    |
| 2011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 21번지 | 12,000 원 | 01월 01일 | 2011/05/31 |    |
| 201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 21번지 | 11,500 원 | 01월 01일 | 2010/05/31 |    |
| 2009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 21번지 | 11,000 원 | 01월 01일 | 2009/05/29 |    |
| 200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 21번지 | 10,500 원 | 01월 01일 | 2008/05/31 |    |
| 2007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 21번지 | 9,500 원  | 01월 01일 | 2007/05/31 |    |
| 200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 21번지 | 9,000 원  | 01월 01일 | 2006/05/31 |    |
| 2005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 21번지 | 9,000 원  | 01월 01일 | 2005/05/31 |    |
| 2004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 21번지 | 9,000 원  | 01월 01일 | 2004/06/30 |    |
| 200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 21번지 | 9,000 원  | 01월 01일 | 2003/06/30 |    |
| 200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 21번지 | 9,600 원  | 01월 01일 | 2002/06/29 |    |
| 2001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 21번지 | 6,760 원  | 01월 01일 | 2001/06/30 |    |
| 200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 21번지 | 6,520 원  | 01월 01일 | 2000/06/30 |    |
| 1999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 21번지 | 4,030 원  | 01월 01일 | 1999/06/30 |    |
| 199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 21번지 | 4,310 원  | 01월 01일 | 1998/06/30 |    |
| 1997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 21번지 | 4,310 원  | 01월 01일 | 1997/06/30 |    |
| 199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 21번지 | 4,310 원  | 01월 01일 | 1996/06/29 |    |
| 1995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 21번지 | 4,220 원  | 01월 01일 | 1995/06/30 |    |
| 1994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 21번지 | 4,800 원  | 01월 01일 | 1994/06/30 |    |
| 199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 21번지 | 5,000 원  | 01월 01일 | 1993/05/22 |    |
| 199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 21번지 | 5,000 원  | 01월 01일 | 1992/06/01 |    |
| 1991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 21번지 | 4,500 원  | 01월 01일 | 1991/06/29 |    |
| 199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 21번지 | 4,500 원  | 01월 01일 | 1990/08/30 |    |

감제14호증

※ 단위면적(㎡)당 산정가격임.

개별공시지가 안내

1. 위 개별공시지가는 기준년월일로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그 이후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등의 변경 또는 데이터 오류 등으로 실제 공시지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주시 2023년 1월 11일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영향권)에  
2. 2023년 1월 11일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영향권)에  
바랍니다



갑 제14호증

# 민사소송절차 안내



## 01 재판준비

|                       |  |
|-----------------------|--|
| <b>조사의무</b>           |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
| <b>소송대리</b>           |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어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청구 사건 등에서는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 고용 등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하여 달라는 신청(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 <b>소송구조</b>           |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변호사비용 등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자금능력과 패소가능성 요건을 심사한 후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
| <b>송달장소, 송달영수인 신고</b> |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 등 외의 장소(대한민국안의 장소로 한정함)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안에 송달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b>송달장소 변경신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에 처음 제출하는 서면에는 도로명 주소, 송달장소,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 등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li> <li>▶ 그 후 주소나 송달장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서류를 종전 송달장소로 발송송달을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체국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였다더라도 법원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li> </ul> |

## 02 재판진행

|                    |  |
|--------------------|--|
| <b>기일출석</b>        | 법원이 정한 재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하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한 것으로 봅니다.   |
| <b>답변서 또는 준비서면</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li> <li>▶ 이때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적고(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하나하나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li> <li>▶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거나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기일 7일 전까지 송달될 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방법을 적은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li> </ul> |
| <b>증거신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거는 늦어도 제1회 재판기일 전에 일괄하여 제출·신청하여야 합니다.</li> <li>▶ 기본적 서증(예: 계약서,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어음·수표 사본 등)과 후속절차가 필요하거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증거방법(예: 문서송부촉탁, 감정·검증·사실조회)은 소송절차 초기 단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li> </ul>   |
| <b>부분제출</b>        |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답변서 준비서면은 '상대방 수+1' 통의 부분, 서증은 '상대방 수+1' 통의 사본, 증인 신문사형은 '상대방 수+4(단독사건은 3)' 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b>화해적 해결 시도</b>   | 법원은 소송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화해권고 또는 조정회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 03 재판안내

#### 각종 안내

- ▶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에서 사건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밖의 재판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종 서류의 양식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 시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법원에 전화하거나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양식 → 장애인 시법지원)에서 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04 조정제도안내

#### 조정제도

- ▶ '조정절차'는 당사자 사이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적정·공정·신속·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화해적 절차입니다.
- ▶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게 됩니다.
- ▶ 수소법원(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사건을 조정예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하면 재판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 [전자소송 안내]

###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전자소송하세요



#### 인증서 준비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 또는 행정전자서명인증서)



#### 사용자 등록

(전자소송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 회원가입)



#### 전자소송동의 및 인증

☑ 법원 : 제주지법      ☑ 사건번호 : 2023가단58574  
 ☑ 전자소송인증번호 : 5254770977      ☑ 사용자명 : 김미영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제3자가 전자소송인증번호까지 알게 될 경우 이를 이용하여 본인의 위임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자 소 송

전자적  
제출

전자적  
송달

전자적  
열람

전자적  
납부

제증명  
전자적  
발급

#### 서류제출

소장 및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서류
- 가사 서류
- 회생 파산
- 특허 서류
- 행정 서류
- 민사집행
- 비송 과태료
- 지급 명령

#### 송달문서확인

온라인으로 송달받은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체송달문서
- 미확인송달문서

#### 나의전자소송

나의 사건기록과  
사건진행내역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나의사건현황
- 나의사건관리

○ 상세한 사항은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 → '전자소송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이용-장애 문의는 사법사용자지원센터[평일 09:00~18:00, 02)3480-1715]로 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서 요약표>

사건번호 : 20 가

| 구분                                    | 피고의 의견 요약 (해당 란에 ☑ 표시)  |
|---------------------------------------|---|
| 1.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 <input type="checkbox"/> 전부 인정<br><input type="checkbox"/> 일부 다툼<br>(답변의 요지 : )<br><input type="checkbox"/> 전부 다툼<br>(답변의 요지 : )                |
| 2. 화해 <sup>1)</sup> ·조정 <sup>2)</sup> | <input type="checkbox"/> 희망함<br><input type="checkbox"/> 희망 않음  |
| 3. 소송요건 흠결 유무                         | <input type="checkbox"/> 관할 위반 주장<br><input type="checkbox"/> 이송 신청<br><input type="checkbox"/> 기타 소송요건 흠결( )<br><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 20 . . . . .                          |   |
| 작성자<br>(연락처                           | (서명 또는 ㉠)<br>)  |

※ 사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서 요약표>의 1항 내지 3항의 해당 항목에 ☑ 표시를 한 다음, 답변서의 표지 다음 장(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맨 앞장)에 붙여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 소송상 화해라 함은 소송의 계속 중에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앞에서 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호 그 주장을 양보함에 의하여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상 합의를 말합니다.
- 2) 민사조정제도란 민사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중립적인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당사자가 쉽게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쟁해결방법으로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툼 있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1회 이상 조정에 회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